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!
이정훈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「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제정안의 목적은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.

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「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」, 서울시에서 관리·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시설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